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1784 번 호

제출연월일: 2021. 6. 25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정이유

「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·복구에 관한 조례」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우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구민이 손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활용도가 떨 어지는 실정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별도 조례로 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 규정(안 제1조)
- 나. 지역자율방재단 역할, 구성 사항 규정(안 제2조 ~ 제3조)
- 다. 단장의 임기, 임무, 해임 사항 규정(안 제4조 ~ 제6조)
- 라.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역할. 협의회 구성 사항 규정(안 제7조 ~ 제8조)
- 마. 회원의 임기, 회장의 임무, 협의회 운영 규정(안 제9조 ~ 제11조)
- 바. 소집 규정(안 제12조)
- 사, 운영, 출입증 발급 규정(안 제13조 ~ 제14조)
- 아. 교육 및 훈련 규정(안 제15조)
- 자. 중앙지원단 자문, 감독, 포상 규정(안 제16조 ~ 제18조)
- 차. 재해보상금 청구, 유족의 우선순위 규정(안 제19조 ~ 제20조)
- 카.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규정(안 제21조)
- 타. 재해보상금 환수 규정(안 제22조)

3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- 가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66조
- 나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제60조 ~ 제65조

4. 제정조례아: 따로 붙임

30 (제237회-복지건설위제2차부록)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 평가: 개선사항 없음(여성가족과-19779호, 2021. 5. 17.)

라. 입법예고: 2021. 5. 10 ~ 5. 31.(21일간) / 의견없음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지역자율방재단 역할)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 라 한다)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"구"라 한다)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(이하 "방재단"이라 한다)을 둔다.
 - 1. 방재단의 인적·물적 자원 및 장비 등 상시 관리
 - 2.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· 정비
 - 3. 재난예방·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
 - 4. 재난관련 교육·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·훈련실시
 - 5.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, 주민대피유 도. 차량통제 등
 - 6.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, 긴급 구호물자 조달 및 전달
 - 7. 재난지역 응급복구(전기, 통신, 상·하수도 등)
 - 8. 감염병 방재활동, 공중보건관리 등
 - 9. 인력, 장비,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
 - 10. 재난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, 주소 및 연 락체계 유지.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
- 제3조(방재단 구성) ① 방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,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단장은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0조제 3항에 따라 단원이 호선(互選)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.
 -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.
 - ④ 단원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·단체·기업체·기관·학교· 종교단체·동호회 등으로 한다. 다만,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한 경우 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.
 - ⑤ 제4항에 따른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

하며,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한다.

- ⑥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동 지역자율 방재단(이하 "동방재단"이라 한다)을 구성할 수 있다.
- ⑦ 동방재단 단장(이하 "동방재단장"이라 한다)은 해당 동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⑧ 동방재단원은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.
- 제4조(단장의 임기) ①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 - ② 보궐단장의 임기는 전임단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5조(단장의 임무)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,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다.
 - ② 단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 -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6조(해임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.
 - 1. 단원이 실종되거나 행방불명 된 경우
 - 2. 단원이 구 이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. 다만,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 - 3.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
 - 4.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 - 5.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- 제7조(지역자율방재협의회) 구청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·조정 및 정책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 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8조(협의회 구성)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.
 - 1. 방재단 단체대표
 - 2. 동대표
 - 3. 방재전문가
 - 4.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

- ② 회장은 제3조에 따라 임명된 단장으로 하고, 부회장은 회원 중에 서 호선한다.
- 제9조(회원의 임기) ①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 - ②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0조(회장의 임무)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. 협의회 업무를 총 괄하다.
 -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회장은 협의회 의결로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인력, 장비,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·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 게 건의할 수 있다.
- 제11조(협의회 운영) ① 회장은 회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거나 필요 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.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2조(소집)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. 다만,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.
 - ② 구청장은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6조, 법 제66조 및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예방 · 복구 등의 업무를 수 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.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0조에 따라 특별재 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 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 - ④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 를 제출해야 한다.
- 제13조(운영) ① 단원이 방재단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한 경우 그 활동

- 이 완료되면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 활동내용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- ④ 방재단원은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종합상황실(이하 "종합상황실"이라 한다)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. 다만,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, 인원, 조건, 임무 등은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
-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-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대표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.
- ⑦ 단장은 해마다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 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⑧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비는 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.
- ⑨ 구청장은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.
- 1.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식대, 여비, 유류대 등 필수 경비
- 2.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, 부상,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. 다만,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에서 보험이 가입되 어 있거나 지원되는 경우에는 제외
- 3. 제복, 모자,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
- 4.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
- 5. 단워의 교육·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·훈련에 소요되는 비용
- 6.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
- 7. 구청장이 소집을 요구하여 재난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의 업

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소집수당 비용

- 8.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 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
- ⑩ 구청장은 활동비 등을 지급할 경우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 표 등을 검토하여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4조(출입증 발급) ①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 급하다.
 - ②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해야 하다.
- 제15조(교육 및 훈련) ① 구청장은 영 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 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서면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.
 - 1. 교육

가. 단장: 연 4시간 이상

나. 단원: 연 8시간 이상

- 2. 훈련: 연 4시간 이상
-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민방위 교육 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.
- 제16조(중앙지원단 자문) 구청장 또는 단장은 필요한 경우 방재단의 조직·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- 제17조(감독)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구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·감독 을 해야 한다.
- 제18조(포상) 구청장은 방재활동이 우수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방재단 또는 방재단원에게 「울산광역시 중구 포 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- 제19조(재해보상금 청구 등) ① 단원이 법 제66조제3항 및「자연재해 대책법 시행규칙 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27조의3에 따라 재해보 상금을 청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

9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- 1. 요양보상: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
- 2. 장해보상: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
- 3.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: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가 있을 경우 규칙 제27 조의3제2항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 이 경 우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③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방재 활동과 관련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.
- 제20조(유족의 우선순위 등) ① 재해보상금을 상속받을 유족의 순위는 「민법」에 따른다.
 -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.
- 제21조(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) ① 구청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사람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,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수령을 위임할 경우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1.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: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
 - 2.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: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
- 제22조(재해보상금의 환수) 구청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지명·임명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및 동 방재단의 단장, 부단장, 간사, 대표 등과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위 촉 장

주 소: 성 명:

귀하를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울산광역시중구청장

[별지 제2호서식]

울산광역시 중구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<개인>

등록번호 :

이 름	(남·여)	나이		혈 약	백 형	
주 소			연택	막처		
자 격 증 또는 운전면허증						
재 난 현장경험						
희 망 활동내용						
[특이사항]						

상기 본인은 울산광역시 중구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가입희망자 ○ ○ ○(인 또는 서명)

울산광역시 중구자율방재단장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]

울산광역시 중구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<단체>

등록번호:

단 체 명			대 3	표 자	(휴대전화	:)		
주 소					대표전화			
담 당 자	(휴대전화 :)	부스	 기명 				
인 원	남 명	여	명	총	은인원	玛		
장 비	장비명(규격) 대	장비명((규격) 대	장비	명(규격) 대	장비명(규격) 대		
지원가능	남 명 여 명	장비(구	구격) 대	장비](규격) 대	장비(규격) 대		
전문분야								
활동 희망분야								
[특이사항]								
([별지 제43	([별지 제4호 서식]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)							

상기 본 단체는 울산광역시 중구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> 년 월 일 대 표 ○ ○ ○(인 또는 서명)

울산광역시 중구자율방재단장 귀하

가입희망 회원명부

[단체명]

연번	성	명	성별	연령	자 격 증 및 기능	운전가능 여 부	혈액형	비고

[별지 제5호서식]

활 동 확 인 서

성 명			(인)	등록번호				
	사 유							
활동내용	방 법							
	시 간	~	년 년	월 월	일 부터 일 까 ⁷		시간)	
	장 소							
	내 용							
[건의사항	.)							
확인자	직위		동	대표	성	명		(인)

본인은 울산광역시 중구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울산광역시 중구자율방재단장 귀하

※ 확인자는 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

[별지 제6호서식]

단원 활동현황 총괄표

등록 번호	 성 명	활 동	상 황	비고
번호	∕8' '8' 	횟수	시간	H <u>1'</u>

※ 등록번호

- 개인의 경우는 [별지 제2 서식]의 등록번호를 기재
- 단체의 경우는 [별지 제3 서식]의 등록번호를 기재
- ※ 횟수,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
- ※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 프로그램 등으로 관리
- ※ [별지 제5호 서식]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
- ※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

[별지 제7호서식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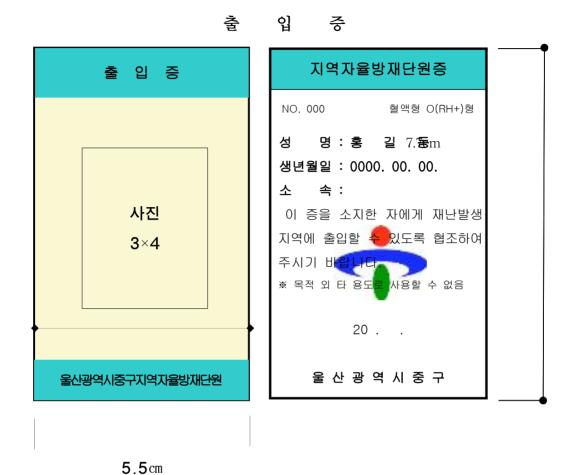
○○○○년도 연중 활동계획서

[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단]

월별	주 요 내 용	비고
1	О	
1	0	
2	0	
	0	
3	0	
	0	
4	0	
	0	
5	0	
	0	
6	0	
	0	
7	0	
	0	
8	0	
	0	
9	0	
	0	
10	0	
	0	
11	0	
	0	
12	O	
	0	

- ※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
- ※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

[별지 제8호서식]



[별지 제9호서식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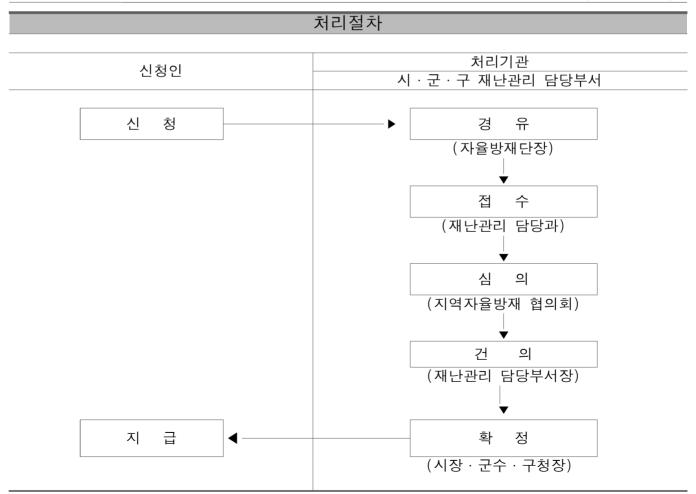
요양	[] , 장해 [] , 장제 [] ,	, 유족	· [] 재해보	상청	구서				
	보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다 	며, []	에는 해당되는 곳에		((앞쪽)			
√ 표를 합니 ※ 시고저스 ㅎ	l다. -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	löh Irl			(. 프 ㄱ /			
접수번호	- 제출자유 또한가단는 자리가단에서 제되 접수일	1699.		리기간	30일				
	소속	전	화번호						
사고자	주소								
	성명	주	-민등록번호(외국	구인등록	(번호))			
	T. A.	-							
-1	주소		[화번호 		= \				
청구인	성명		-민등록번호(외국	+인능독	H世호)			
	사고자와관계								
	사고(사망)일시								
	사고(사망)장소								
사고경위	l경위 사고경위								
및 요양 1. 화재【 】 2. 구조【 】 3. 구급【 】 4. 기타【					1				
	요양(진단)병원								
	요양(진단)결과	요영	냥기간						
	0.0144.1	T1 -	11 1-1 1-1						
- 1 011	요양보상		배보상 						
청구금액	장제보상	 	특보상 						
	청구금액 레비 시해그리 - 페OZ포이스 미 - [TI 어디	OHLTUEL 그서 미	U 0 M		고나를			
	H책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3 및 「.		팔망새난 구성 및	한 군영	등에	판안			
조례」 세16	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	'니다.							
				년	월	일			
	청구인 :		(서명 또는	인)					
위의 사실	과 틀림없음을 증명함.								
				ı - 1	01	οl			
				년	월	일			
	단장 :		(서명	또는	인)				
운사과여 4	시 중구청장 귀하								
= 237					/ 2/TII:	-10 F)1			

		(117)		
	1. 요양보상(①,③,④,⑦,⑧), 2. 장해보상(①,②,③,④,⑦,⑧)			
	3. 장제보상(③,④,⑤,⑥,⑦,⑧), 4. 유족보상(③,④,⑤,⑦,⑧)			
	① 의사진단서, 진료영수증, 진료명세서 각 1부.			
	② 장해증명서류 1부.			
ᅰᅕᆚᄅ	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.			
제출서류	④ 사고발생 증명서류(사고발생 보고서, 목격자 진술서 등) 1부.			
	⑤ 사망진단서(사망증명 서류) 1부.			
	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.			
	⑦ 통장사본 1부.			
	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(필요시) 1부.			
- 담당공무원	요양·장해보상: 주민등록표 등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입금계좌확인정보			
확인사항	장제·유족보상: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, 인감증명서, 입금계좌확인정보		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

근 거 법 규

□ 「자연재해대책법」

[시행 2021. 4. 20] [법률 제18090호, 2021. 4. 20, 일부개정] 제66조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, 봉사단체, 방재 관련 업체,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 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, 대응,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8. 6., 2016. 1. 27., 2017. 7. 26.>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·대응·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0. 24.>
-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 10. 24.>

[전문개정 2011. 3. 7.]

- 제66조의2(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)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 -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 [본조신설 2012. 2. 22.]

□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

읍·면·동 단위로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.

제60조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 단은 시·군·구 단위로 구성·운영한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

[시행 2021. 1. 30] [대통령령 제30782호, 2020. 6. 16, 일부개정]
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
-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(이하 "지역자율방재단장"이라 한다)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(互選)하여 시 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한다.
-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2. 8. 22.]

- 제61조(소집 등) ①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6. 16.>
 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 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6. 16.>
 -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 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20. 6. 16.>

[전문개정 2012. 8. 22.]

[제목개정 2020. 6. 16.]

- 제62조(교육 및 훈련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·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 [전문개정 2012. 8. 22.]
- 제63조(평가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평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4, 11, 19, 2017, 7, 26.>
 -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·군·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 [전문개정 2012. 8. 22.]
- 제64조(중앙지원단의 구성·운영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8. 6., 2017. 1. 26., 2017. 7. 26.>
 - ② 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- 제65조(예산 지원)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(實費)로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8. 6., 2017. 1. 26., 2017. 7. 26.> [전문개정 2012. 8. 22.]

1. 미첨부 근거 규정

- ○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제1호
 -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워 미만인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○ 연간 비용 추계

세부내역	산출근거	비고
계	41,520천원	구비
소집수당	292명×8,887원×4시간×4회 = 41,520천원	

※ 태풍 평균 개수(우리구 영향 기준)

년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평균
개수	2개	3개	3개	6개	3개	3.4개

3. 작성자

○ 소 속: 안전총괄과

○ 직 급: 지방공업주사보

○ 성 명: 장병태

○ 연락처: 052-290-4064